

I. 개요

1. 일시 : 2008년 11월 20일(목) 16:30~18:00

2. 장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8층 회의실

3. 참석자

▣ 발표자 : 최성요 (외교통상부 다자통상협력과 서기관)

▣ 참석자

윤창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위원

김준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송영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현혜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성한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강준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양주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이한영, 중앙대학교 교수

박영덕, KISDI 책임연구원

4. 제목

DDA 서비스 협상 경과 및 전망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그간 서비스협상은 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규범 등에 비하여 그 진전이 저조.
 - 현재까지 제출된 양허안 수는 74개(EC 25개국 포함 98개국)이며 양허안의 질도 높지 않음.
 - 이는 현행 양자 R/O(Request/Offer) 협상방식만으로는 회원국들이 자국의 민감분야에 대한 양허요청을 수용하지 않아 실제로 의미 있는 시장개방을 도출하는데 한계 노정.
- 이에 따라 2005년도에는 양자 R/O 방식을 보완할 수 있도록 수량적 목표 등을 설정하는 보완적 협상방식 마련에 집중적인 논의 진행.
 - 브라질,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요 개도국들의 강한 반대로 홍콩각료회의에서 수량적 목표 채택은 실패하고, 당초 선진국들의 목표에 비해 약화된 형태로 홍콩각료회의에서 합의.
- '05.12.18 홍콩각료회의에서 양허안 개선 목표 및 복수적 R/O 협상방식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 문안 부속서(C) 채택
- 홍콩 각료회의 이후 '06년에 2회, '07년에 5회 및 '08.3월 등 총 9차례에 걸쳐 각 1-2주간 서비스 시장접근 협상 cluster 개최
 - 현재 양자협상, 복수적 R/O 협상을 병행하며, 각국의 양허 개선 계획 협의 지속
- 우리나라는 총 21개 분야 중 10개 분야에는 양허 요청국으로, 9개 분야에는 요청 대상국으로 협상에 참여

- '07.10월부터 서비스 텍스트 관련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2008.7월 개최된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서비스 각료회의(Ministerial Signaling Conference) 개최
 - 다자차원의 서비스 텍스트 협상과 복수국 차원의 서비스 각료회의가 dual track으로 진행
- 현재 '08.2.12 제출된 서비스 텍스트 의장보고서(chairman's report)를 토대로 협상
 - 의장 report는 1)미국, EC, 우리나라 등 ginger group이 공동으로 제안한 텍스트 제안서, 2)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 제안서 3)홍콩, 싱가포르 등 중간 진영 국가들이 제안한 제안서 등 3개 텍스트 제안서에서 주요 element들을 추출하여 작성
 - 우리나라는 가장 높은 수준의 level of ambition과 political guidance를 서비스 텍스트에 명시하자는 ginger group 제안서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 시장개방 협상과는 별도로 UR 후속 협상과제로 국내규제 규범제정을 GATS에 규정(제6조 4항)
 - 1999.4월 국내규제 작업반(WPDR : Working party on Domestic Regulations)을 설립, 규범 제정 논의중
 - 홍콩각료회의 선언문에 DDA타결까지 국내규제에 관한 legal text를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문안을 포함함으로써 2006년부터 본격적인 규범제정협상 전개
- 그간의 국내규제 협상에서는 EC, 미국, 개도국 등 규제 당국자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낮은 수준의 다자 규범을 제정할

것을 주장하는 국가들과 우리나라, 호주, 홍콩, 스위스 등 수준 높은 규범 제정을 주장하는 국가들간의 대립 지속

□ '07.4.18 의장 텍스트가 회람된 이후 본격적으로 조문별 검토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그간의 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텍스트 회람('08.1.23)

- 의장 텍스트는 필요성 심사의 개념을 non-operative language로서문에만 반영하며 각 주제별 문안에는 필요성 심사를 삭제하는 등 기존의 미국, 브라질 등 입장을 대폭 수용

- 수정 텍스트는 큰 내용상의 변화는 없으며, 우리가 요구한 level of ambition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

□ 서비스 교역의 활성화 및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외개방 추진 못지않게 합리적이고 공평한 국내규제 조치 마련이 필수적임을 감안, 국내규제 규범제정 작업에 능동적으로 대응

- 경쟁력 있는 우리 서비스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서도 합리적이고 공평한 국내규제 제정은 필수적

□ 우리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홍콩제안서가 비교적 균형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동 제안서 공동제안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높은 수준의 국내규제 규범 제정 노력 전개

□ 핵심 쟁점인 필요성 심사 관련, 미국, EC 및 개도국들의 강경한 반대 입장과 기존의 높은 수준 규범 채택을 주장했던 국가들간의 공조가 약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협상 추이를 주시하며 필요성 심사 관련 대응 수위를 신중적으로 조절

2) 토론 내용

- 국내규제 필요성 심사 도입여부에 대해 미국과 EC 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주장할 필요는 없을 것임.
 - 현재 한국은 전반적으로 필요성심사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과 인허가 과정에서만 필요성 심사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미국과 EC가 예측불가성과 주권침해를 이유로 강력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도입되기는 어려워 보임.
 - GATS 6조에 이미 필요성심사가 도입되었다고 해석할 여지도 많음.
- 12월 소규모 각료회의가 열려 modality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2009년 2,3월까지 수정양허안을 제출하고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이 많음.
 - 서비스 협상은 2005년 수정양허안 제출 이후 실질적 진전이 거의 없는 상황임.
- 규범에서 정부조달의 경우 GPA에서 EC가 양허 후퇴를 하였지만 GPA는 복수협정이고, GATS는 다자협정이라 이런 EC의 입장변화가 정부조달 규범 제정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음.
- 복수적 R/O의 경우 실제적 효과는 없었고, 단지 정보 교환에 도움이 되었던 정도였음.
- 한미FTA에서 법률, 회계, 통신, 방송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 양허를 DDA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관계 부처는 부정적임.